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경상북도도청 산림산업과-526(2019.01.21.)호와 관련하여 자연휴양림 예약 정책 표준화 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전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시간 변경(제5조)

- 사용 첫날 오후 3시부터 퇴실일 오전 12시 →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퇴실일 오전 11시

나. 이용신청방법 변경(제11조)

- 당초 : 예약 후 24시간 내 미입금 시 취소
- 변경 : 이용 신청 시 다음날 23:50분까지 납부하고, 사용예정일 7일전에는 당일 3시간 이내 사용료 납부

다. 자연휴양림 성수기 일자변경(별표1)

- 당초 : 매년 7월1일 ~8월 31일 → 변경 : 매년 7월15일~8월 24일

라.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기준(별표2)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20713(2019. 5. 27.)〕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기획감사실-4701(2019. 5. 20.)〕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9. 5. 28. ~ 2019. 6. 17(20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사더래길 144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숲속휴양관
3. 제2휴양관
4. 세미나실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세미나실의 이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④ 위 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주군이 주관하는 직원 직무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휴양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3. 착오 등에 따른 납부가 확인된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세미나실	67.8㎡	1실/4시간	50,000	30,000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제1휴양관	50.3㎡형 (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8실
숲속의 집	49.8㎡형 (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2실
	66.8㎡형 (8인기준)	1동/1일	150,000	90,000	2실
제2휴양관	28.5㎡형 (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29.5㎡형 (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36.2㎡형 (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1실
	43.1㎡형 (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2실

※ 퇴실기준일 해당 객실의 입실객이 없을 경우 추가사용료를 지급하여 연장사용 가능하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별표1의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3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하는 자	30%	
	다자녀 가정	30%	
	성주군민	30%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	50%	

비고

1.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1인 1실에 대한 감면만 가능 또한 감면대상자는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라. “경상북도 할매 할배의 날 주간”이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속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마. “경로자”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을 말한다.

바.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사. “협약(MOU) 체결 기관·단체”라 함은 휴양림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를 말한다.

아. “성주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자.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이란 성주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7월15일~8월23일)를 제외한 일요일~목요일을 말한다.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이란 성수기(7월15일~8월23일)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성주군수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